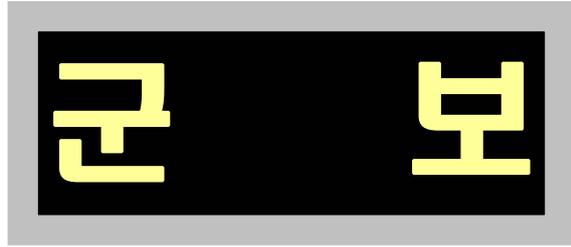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60호 2022. 10. 04.(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503호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2-114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2-1451호 고창군 사이버주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
- 고창군 공고 제2022-1456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2
- 고창군 공고 제2022-1485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3
- 고창군 공고 제2022-1488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37
- 고창군 공고 제2022-1492호 2022년 고창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3차) 공고 51
- 고창군 공고 제2022-1503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예고 60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회 보】

- 2022 종합민원실 신축신고-24 (2022.9.21.) (의료법인 지식의료재단)도로지정 68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9월 일

고창군 훈령 제503호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감사법무팀장”을 “감사팀장”으로, “기획팀장·예산팀장·군정홍보팀장”을 “기획팀장·예산팀장·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감사법무팀장”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 자체감사 실시결과 처리에 있어 <u>기획예산담당관</u>의 의견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기획예산실장</u>----- ----- ----- ----- ----- -----.</p>
<p>제3조(심의회 설치·구성)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기획예산담당관</u>이 되고, 부위원장은 <u>감사법무팀장</u>이 되며, 위원은 <u>기획팀장·예산팀장·군정홍보팀장</u>이 된다.</p>	<p>제3조(심의회 설치·구성) ----- ----- <u>기획예산실장</u>----- ----- <u>감사팀장</u>----- <u>기획팀장·예산팀장·대외협력팀장</u>-----.</p>
<p>제7조(결정사항의 효력) 심의회 의 결정 사항의 효력은 상위결정권자에 제시할 <u>감사법무팀장</u>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p>	<p>제7조(결정사항의 효력) ----- ----- ----- <u>감사팀장</u>----- -----.</p>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고창군 고시 제2022-114호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9. 26.

고 창 군 수

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A - B)
	예 산 액	결 산 액(A)	예 산 현 액	결 산 액(B)	
계	816,573,337,000	949,214,923,811	944,847,294,070	767,052,738,050	182,162,185,761
일반회계	794,280,836,000	924,874,718,138	922,547,193,070	745,467,607,810	179,407,110,328
특별회계	22,292,501,000	24,340,205,673	22,300,101,000	21,585,130,240	2,755,075,433
공기업특별 (상수도)	20,492,565,000	20,715,843,350	20,500,165,000	19,923,974,070	791,869,280
기타특별	1,799,936,000	3,624,362,323	1,799,936,000	1,661,156,170	1,963,206,153

○ 이월액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차인잔액	이 월 사 업 비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82,162,185,761	152,383,811,670 (127,392,000)	101,262,149,850 (127,392,000)	40,858,745,400	10,262,916,420	7,039,879,760	22,865,886,331
일반회계	179,407,110,328	152,096,511,670 (127,392,000)	100,982,449,850 (127,392,000)	40,851,145,400	10,262,916,420	7,022,058,672	20,415,931,986
특별회계	2,755,075,433	287,300,000	279,700,000	7,600,000	0	17,821,088	2,449,954,345
공기업특별 (상수도)	791,869,280	287,300,000	279,700,000	7,600,000	0	3,732,300	500,836,980
기타특별	1,963,206,153	0	0	0	0	14,088,788	1,949,117,365

※ 이월사업비는 자금없는 이월액(127,392,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나. 2021년말 기금현재액(10종)	18,752,161,498원
다. 2021년말 채권현재액	3,641,395,054원
라. 2021년말 채무현재액	19,300,000,000원
마. 2021년말 공유재산현재액	2,375,831,519,485원
바. 2021년말 물품현재액	10,497,733,184원
사. 2021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합 계
자 산 (A)	3,033,496,906,932	7,102,009,949	19,993,461,790	90,143,225,190	(40,951,718,000)	3,109,783,885,861
부 채 (B)	37,356,899,709	48,990,818	0	182,486,966	0	37,588,377,493
순자산 (A-B)	2,996,140,007,223	7,053,019,131	19,993,461,790	89,960,738,224	(40,951,718,000)	3,072,195,508,368

○ 재정운영표

(단위 : 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합 계
수 익 (A)	734,727,577,802	1,627,241,652	7,826,322,448	9,358,424,085	(12,642,165,380)	740,897,400,607
비 용 (B)	611,621,786,953	1,689,961,107	1,743,114,011	11,096,490,071	(12,642,165,380)	613,509,186,762
운영차액 (B-A)	(123,105,790,849)	62,719,455	(6,083,208,437)	1,738,065,986	0	(127,388,213,845)

고창군 공고 제2022-1451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2년 9월 15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홍보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 2조)
-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에 관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이버군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마련 규정을 정함.(안 제7조)

3. 예고기간 : 2022. 9. 15. ~ 2022. 10. 5.(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참조: 신활력경제정책관, 전화 063-560-2349, 팩스 063-560-2369, 전자우편 sysy1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미래전략팀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상호 간의 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 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고창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사이버고창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고창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자와 별지서식의 사이버고창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6. “사이버고창군민약관”이란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용조건 및 절차, 군과 회원 간의 권리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사이버고창군민은 내·외국인으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서 별표와 같이 사이버고창군민증을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고창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고창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고창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고창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사이버군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벤트 개최
6. 사이버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①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사이버고창군민증 수여
2.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감면
3. 「고창군 읍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장료 등 면제
4. 고창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6.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고창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이버군민증(제4조 관련)

<앞면>

<뒷면>

<p>제 000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군민증</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right: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사진</p> </div> <div style="text-align: left;"> <p>성 명 : _____</p> <p>생년월일 : _____</p> <p>주 소 : _____</p> </div> </div> <p>귀하를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이버고창군민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창 군 수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이버고창군민 혜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증 교부 2. 군 주요관광지(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다) 입장료 및 관람료의 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교통·관광·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 제공
---	---

[별지서식]

사이버고창군민 가입신청서						
가입 신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현 주 소					
	핸 드 폰			이 메 일		
	사 이 버 주 소	고창군 읍면동 고향, 출생지, 본적, 방문지, 친척집 등 본인이 희망하는 사이버상 고창 주소입니다. (미 기재시 임의로 지정해 드립니다.)				
	추 천 인					
	사이버군민 홈페이지 ID	희망ID사용				
	임의ID사용	아이디를 기재하지 않으면 임의로 ID를 부여				
<p>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고창군의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신청하며, 고창군에서 제공하는 E-mail과 SMS 수신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p> <p>고창군수 귀하</p>						

고창군 공고 제2022 - 1456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고 창 군 수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청년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고창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 : 15명 이내
 - 부군수(위원장),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등(위원)
- 위원회의 운영(안 제13조)
- 청년정책사업(안 제18조)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2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9.15. ~ 2022.10.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전화: 063-560-2364,

팩스: 063-560-23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전화: 063-560-2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및 고용 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청년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복지증진
 -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8조(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기획, 문화,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 5.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위원 또는 구성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서기 1명을 청년정책 업무 담당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고창군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 보고서 발간 등
6. 제8조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제8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15조 협의체의 구성원 등

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

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참여, 경험축적 지원사업
2. 청년의 취업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사업
3.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의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조성 사업

5.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장려 사업
 7. 청년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8.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 주간행사 등
 9.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10.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1.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12. 청년정책 관련 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13.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청년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지원 제한)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청년창업상품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창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군수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고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청년기본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2-1485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 ~ 5조)
-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준용)(안 제8 ~ 제24조)
- 라. 부칙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전화 : 063—560—2349, FAX : 063—560—236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sysy127@korea.kr)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붙임 1.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창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까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고창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고창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고창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창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생산한 물품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고창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관리 총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관리 지정 금융기관장

나.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인센티브 지급) 군수는 관계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띠띠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시상금을 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22-1488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4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안 제11조 ~ 제21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22조 ~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전화 : 063—560—2349, FAX : 063—560—236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sy127@korea.kr)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창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까지,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고창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고창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 12. 고창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창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 13.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생산한 물품
-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고창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관리 총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관리 지정 금융기관장

나.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 하

고창군 공고 제2022-1492호

2022년 고창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3차) 공고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고 창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 사업물량 : 4대
- 사 업 비 : 800만원
- 지원금액 : 1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9.27.(화) ~ 2022.10.11.(화) 09:00~18:00
- 접 수 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6)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제출(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지원대상

- 고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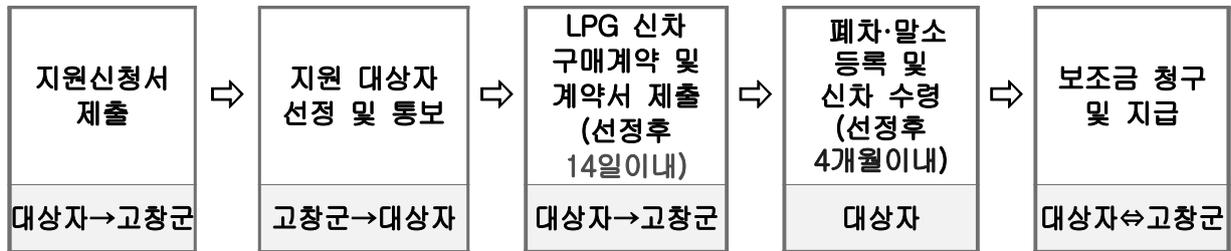
※ 조기폐차 진행 차량과 LPG화물차 신차의 명의를 동일인이어야 함.

※ 2021.12.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 일 반 :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된 차량)
 - 최초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영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 보조금 지급절차



- ① 지원신청서 제출 :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 1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 선정 대상자 증빙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고창군 → 지원대상자
- ③ LPG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 → 고창군
 - 신차 구매계약서 환경위생과 제출(14일 이내, 선정자에 한함)
 -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
- ④ 조기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대상자 선정 4개월 이내)
- ⑤ 보조금 신청 : 지원대상자 → 고창군 (대상자 선정 4개월 이내)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 LPG 1톤 화물차 신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4개월까지 상기 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
- ※ 조기폐차 차량과 **LPG**화물차 신차의 소유주 명의, 사업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의 명의를 모두 동일해야 함(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 4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⑥ 보조금 지급 : 고창군 → 소유주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 LPG 신차 구입시 1대당 200만원 정액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차구매 보조 지원금에 추가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이자 제외)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이자 제외)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3. 위임장

[붙임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p>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 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고창군수 귀하</p>			
<p>※ 공통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붙임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2 연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연결]

청 럽 이 행 서 약 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고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및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제재 규정(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 >

○ 부정이익등의 환수(제8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
-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제제부가금의 부과·징수(제9조)

- 행정청은 법률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제부가금을 부과·징수. 단,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제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2022 . . .

서약자

(서명/인)

고창군수 귀하

[붙임 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고창군 공고 제2022 - 1503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예고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2 년 9 월 28 일

고 창 군 수

1. 개정 이유

- 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법 및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름
 - 각 조문별 기한 경과로 연장되는 각 조문의 개정.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따름.
- 나. 조례개정 내용(안)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 제2장 (제2조 ~ 제10조) 삭제 및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기한연장(2025년 6월 30일)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삭제(상위법에 근거함)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기한연장(2023년 12월 31일)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기한연장(2023년 12월 31일)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기한연장(2023년 12월 31일)
 - 시장 현대화에 대한 감면 : 기한연장(2023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 56428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재무과
(전화 : 063-560-2472 FAX : 063-560-2509)

○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정재택
(전화 063-560-24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5년 6월 30일”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31일” 을 “2023년 12월31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31일” 을 “2023년 12월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21년 12월31일” 을 “2023년 12월31일” 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31일” 을 “2023년 12월31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에서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 2023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2023년 12월 31일-----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 조례(안)명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조례(안)	의견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고 창 군 수 귀하</p>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현황도

축척

